

건설동향 BRIEF_{ing}

•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의 실효성 제고 방안

- PF 자기자본비율 20% 상향 규제,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 한시적 유예
- 저자본·고보증 구조개선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
- 사업유형·규모별 등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적정 자기자본비율 모색 필요

• '26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138명, 최근 10년 중 최저

- 건설업 사고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27.0% 감소한 138명, 10년 내 최대 감소 폭
- 전산업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 33.7%, 10년 만에 40% 아래로 하락
- 사고사망만인율 0.54‰로 전산업의 3.1배, 개선 흐름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국내 PF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유형·입지·규모별 위험을 반영한 자기자본비율 체계 마련 -

고하희(부연구위원 · ghh1003@cerik.re.kr)



PF 자기자본비율 20% 상향 규제,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 한시적 유예('29년 시행)

- 정부는 지난 '24년 11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부동산 PF 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20% 단계적 상향 로드맵을 제시함.
 - '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24년 11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전반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섬.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②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③ 역량 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을 3대 축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중 '자기자본' 관련 하여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함.
 - '자기자본비율'이 핵심 지표로 설정된 배경에는 국내 PF 사업 특유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함. 국내 부동산 PF는 통상 사업비의 5% 내외만 자기자본으로 투입하고¹⁾, 나머지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책임준공확약이나 신탁사를 통한 신용보강 등을 바탕으로 한 대출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리스크가 시행사에서 시공사·신탁사, 금융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짐.
 -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는 규제를 발표한 것이며, 자기자본비율 상향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도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²⁾
-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해 '26년 8월, '주거사업장'에 한하여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9년까지 2년간 한시 유예하기로 발표함.
 -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유예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주택공급 부족이 주택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1)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024.11.14.).

2)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과 회계상 손실 부담을 의미함.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자본과 비용이 커지고, 이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PF 사업장은 대출 조건이 불리해지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워짐. 즉,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이 수치들을 높게 적용해 대출 문턱을 높임으로써 시행사가 자기자본비율을 스스로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취지임.

‘주택공급 활성화’가 부동산 정책 중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이러한 기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6.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PF 주거사업장에 한해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기를 당초 '27년에서 '29년으로 2년간 한시 유예하겠다고 발표함.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예정대로 '27년부터 시행하기로 함.³⁾
- 이번 유예는 자기자본비율 하나만 미뤄지는 데 그치지 않음.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2년간 유예됨에 따라 이와 연동해 설계되었던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강화 조치도 함께 유예 대상에 포함됨.

〈표 1〉 부동산PF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 유예의 주요 내용

구분	핵심 내용	비고
PF 대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20%까지 단계적 상향 (2027년 5% → 2028년 10% → 2029년 15% → 2030년 20%)	당초 2027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시기를 2029년까지 유예
PF 사업성평가·충당금	자기자본비율 등에 따라 평가 등급·충당금 차등화	
은행권 위험가중치	자기자본비율과 분양률에 따라 위험 가중치 100~150% 차등화 (현재는 150%로 일률 적용)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위험가중치	PF 대출에 은행과 같은 ‘위험 가중치 체계’ 신규 도입 (현재 저축은행·여신사는 위험 가중치 체계 없음)	

자료 : 금융위원회(2026.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저자 정리.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부동산 PF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방향성은 긍정적

- 국내 PF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은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장의 고질적인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측면에서는 긍정적임.
- 그간 우리나라 PF 산업구조에서는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기관이 시공사의 연대 보증·책임준공약약 등 신용보강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공사(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사도 포함)가 사업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떠안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음.
- 이러한 점에서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은 규제 대상인 시행사뿐 아니라, PF 사업의 신용보강을 사실상 전담해 온 시공사·신탁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는 우리

3) 당초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14)에서 제시된 로드맵은 2028년까지 자기자본비율 20%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여러 정책 발표를 거치며 최종 목표 시점이 2030년으로 조정됨. 금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6.8.13.)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20%를 채우도록 한 기존 로드맵에서 ‘주거사업장’에 한해 시작 시점만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춘 것임. 이에 따라 이후 로드맵이 동일하게 2년씩 순연될 경우, 최종적으로 20%를 채우는 시점도 2032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나라 부동산 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PF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이렇게 올바르게 설정된 정책 방향이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방향성에 맞춰 세부 내용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작업이 함께 뒤따라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PF 사업의 특성’인 낮은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사업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수립 시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해당국의 사업 방식·환경·시스템을 국내와 충분히 견주어 반영하는 과정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 20% 목표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024.11.14.)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20%)을 유도’하겠다고 명시한 데에서 비롯됨. 그러나 벤치마킹 대상지인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자기자본비율(통상 30% 이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그 나라 고유의 PF 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인 만큼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미국은 펀드·리츠·연기금·개인투자자 등 자본조달원이 비교적 다양하게 발달한 편으로 전체 자본 조달 중 리츠가 26%, 연기금이 13%, 외국인투자가 5%를 차지⁴⁾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분투자자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음.
- 일본 역시 미쓰이부동산과 같은 디벨로퍼가 분양 수익뿐 아니라 임대수익·자산관리수익 등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있으며, 대형은행이 스폰서로 참여하는 리츠도 비교적 활성화 되어있음.

● 우리나라는 지분투자 활성화 여건이나 디벨로퍼 특성 등에서 선진국과는 다른 고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부동산 PF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국내만의 PF 산업구조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는 타 선진국과는 달리 기관투자자가 리츠·신탁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지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음. 특히 PF 리스크를 상당 부분 부담했던 신탁사는 현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 위한 별도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⁵⁾ 이처럼 국내는 지분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국·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지분투자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활발히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디벨로퍼(시행사)의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음. 국내 디벨로퍼는 등록 사업자 약 2,400개사 중 연 매출 100억 원 이하가 95%에 이를 정도로 영세⁶⁾한 반면, 미국·일본은 상대적으로 대형 디벨로퍼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자기자본 조달 여력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음.

4) 황순주(2025.7.),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5) 정부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024.11.14.)에서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 기관투자자의 지분투자는 받지 못하고 차입 위주의 자금조달만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 바 있음.

6)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024.11.14.).

- 정부도 이러한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서 미국의 업리츠(UPREIT)⁷⁾ 제도를 참고하여 토지주가 세금 부담 없이 현물출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바 있음. 다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이제서야 마련되는 초창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자기자본비율 상향은 국내 PF 산업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조치로서 시행사에 집중된 위험을 분산하고 시공사·신탁사에 전가된 신용보강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고 타당해 보임. 다만, 자기자본비율 상향이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지분투자 생태계 육성이 먼저 뒷받침되고, 국내 디벨로퍼 지원 등 규제와 병행되는 기반조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국내 PF 산업구조와 사업유형·규모별 특성 등에 맞는 적정 자기자본비율 모색 필요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PF 제도개선 발표(안)은 저자본·고보증 구조 개편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임. 다만, 20% 수준의 고정된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위험 가중치·충당금을 일괄 차등화하는 방식은 사업장별 리스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한계]**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이나, 이는 PF 사업의 리스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 PF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훨씬 다양한 요소가 작용함.
- 예컨대 '자기자본비율은 낮으나 사업성이 우수하고 공적보증이 결합되어 있는 등 사업 안정성이 높은 사업장'과 '자기자본비율은 높으나 입지·분양 여건 등 고유 특성으로 인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단순히 자기자본비율만으로 판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결국 주거·비주거 등 용도, 수도권·지방 여부, 나아가 동일 수도권 내 세부 입지에 이르기까지 사업성은 천차만별로 나타남.
- 실제로 금번 정부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었던 기존 선행 연구들도 PF 사업장 자료를 분석할 때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에 제출된 초창기 사업성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사업 종료 이후의 최종 성공·실패(부도) 여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함.
- 아울러 올해 국토연구원(2026)⁸⁾이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 적정 자기자본비율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도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약 15%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 수준이 금리·공사비·토지비·분양률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처럼 단일하고 고정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 기준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7) 토지주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리츠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 출자 시점의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시켜 주는 리츠 방식

8) 황관석 외(2026.3), 「부동산 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정책제언]**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과 실제 부실률 간의 관계를 온전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최종 성과까지 반영한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실증분석이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는 부동산 PF 사업장별 데이터 구득이 어렵고, 데이터 자체도 충분히 축적·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이에 따라 사업장의 유형·규모별 등 특성에 맞는 자기자본비율을 정교하게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는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선행되어야 함.
- **[한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사업장별·유형별로 정교하게 설계하려면 다각적인 시뮬레이션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나, 현재는 PF 사업장별 정보가 금융기관·신용평가기관·금융위·국토부·지자체 등에 분산·관리되고 있어 사업장 단위로 정보를 연계·추적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그간 부재하였음.
- **[정책제언]** 이러한 통합정보시스템을 2년간의 유예기간 내 조속히 구축⁹⁾하고, 이를 통해 축적되는 유형별·지역별·사업장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실률과 자기자본비율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유형별·위험등급별 최소 자기자본 기준과 금융규제 차등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금번 유예는 '주거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주거·비주거 용도가 혼재된 복합개발 사업장의 경우 유예 적용의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계]** 금번 유예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주거·비주거 용도가 혼재된 복합개발(주상복합, 생활숙박시설 등)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하나의 PF 사업장을 주거·비주거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기준이 불명확함.
- 비슷한 맥락에서 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혼재 사업장에 대한 보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후속 조치로 혼재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 범위를 기존 '주택 연면적' 기준에서 '주택+준주택 연면적'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확대함.¹⁰⁾
- **[정책제언]** 이처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이미 보증제도에 적용된 만큼 자기자본비율 유예에서도 이와 같이 사업장 내 주거 연면적 비율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느 정도의 주거 비중부터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외에도 '금융회사 자체 PF 익스포저 한도규제'는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유예 취지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금번 자기자본비율 유예의 목적이 '주택공급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이를 저해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유예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음.

9) 정부는 2026년부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024.11.14.)).

10) 한국주택금융공사(HF), 「PF 공적보증 강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보도자료(2026.8.31.).

- **[한계]** 현재 PF 관련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금융회사 자체의 PF 익스포저 한도규제임.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6조(투자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의 투자한도는 자기 자본의 30% 이내, 부동산 PF 채무보증의 익스포저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익스포저 총량 규제뿐 아니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 개편 역시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채무보증 방식 PF의 NCR 위험값이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증권사의 부동산 PF 신용보강 공급 규모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브릿지론은 본 PF 전환의 전 단계로서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의 초기 관문에 해당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자금 공급이 막히면 후속 단계인 자기자본비율 유예의 정책 효과 자체가 발현되기 어려움.
-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권의 각종 규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과 무관하게 금융회사 자신의 자본 여력 및 건전성 지표에 따라 결정되는 제약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우량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의 한도·건전성 비율이 소진되면 신규 PF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임.
- **[정책제언]**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유예한 만큼 그 취지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려면 동일한 유예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PF에 한해 익스포저 한도규제뿐 아니라 NCR 위험값 등 건전성 규제 전반에 대해서도 완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구분	현황 및 한계	정책 제언
자기자본비율 평가 체계	자기자본비율 단일 기준으로는 PF 사업장별 개별 리스크 반영 미흡	고정된 단일 기준보다는 사업성 평가등급, 공적보증 여부, 인·허가 단계 등을 고려한 복합 평가 체계 설계 및 시장상황을 반영한 탄력적 기준 마련
유예 사업장 유형 명확화	주거·비주거 혼재 복합개발 사업장 분류 기준 불명확	연면적 비율 등과 같이 명확한 분류 기준 마련
금융 규제	금융회사 자체 PF 익스포저 한도(NCR 등) 병존으로 유예 실효성 제한	주택공급 관련 PF에 한해 한시적 완화 검토
PF 통합정보시스템	PF 사업장별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어 PF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연구할 수 있는 자료 부족	PF 통합정보시스템 조기 구축 및 이를 통한 PF 유형별·위험등급별 차등 체계 설계를 위한 실증 검증 병행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유예기간이 2년 남은 만큼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기간을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❶ 시행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 ❷ 시공사·신탁사의 리스크 부담 완화, ❸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공급 여건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정책목표도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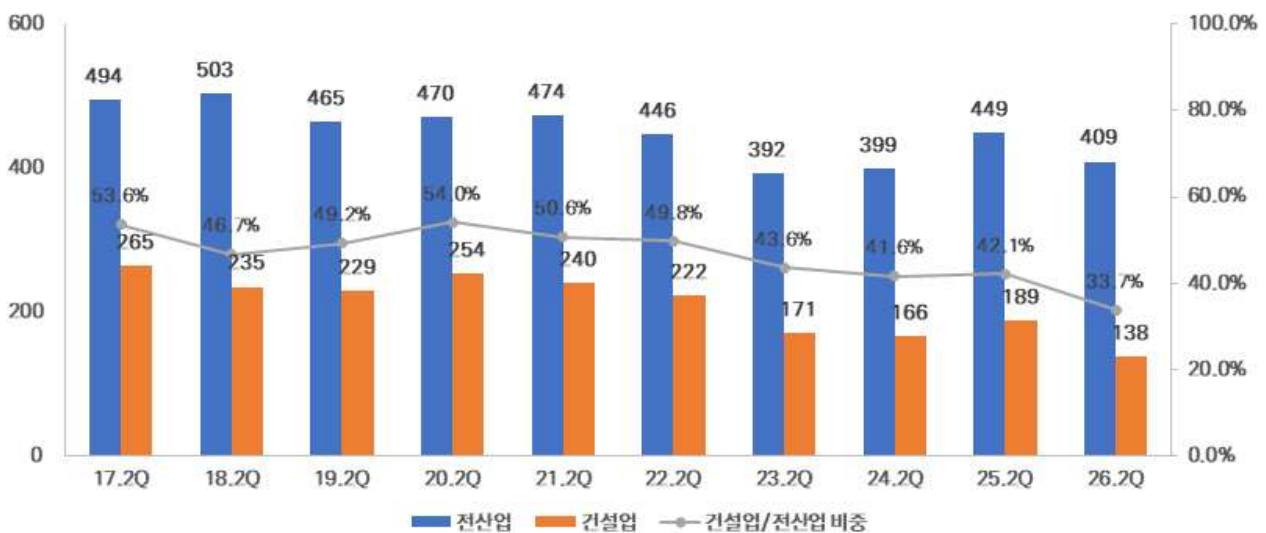
- 사고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51명(27.0%) 감소한 138명, 10년 내 최저치 -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26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138명, 최근 10년 중 최저 기록

- 고용노동부의 '26년 2분기 산업재해통계¹¹⁾에 따르면,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산업 409명의 33.7%를 차지하였음. 전년 동기(189명) 대비 51명(27.0%) 감소한 수치로 '17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음.

〈그림 1〉 최근 10년 전체 및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변화



자료 : 연도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 최근 10년간 상반기 추이를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7년 265명에서 '26년 138명으로 무려 127명 (47.9%)이 감소하였음. 동기간 전산업 사고사망자는 494명 → 409명으로 17.2% 감소하였고, 건설업을

11) 지난 9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6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자료임. 해당 통계는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보상통계, 산재보험 가입자 수 등 집계)로, 실제 재해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조사통계, 근로자 수 등 미집계)와는 차이가 있음.

제외한 타 산업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가 42명 증가하였음¹²⁾을 알 수 있음.

- 건설업이 전산업 사고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년 상반기가 33.7%로 '20년(54.0%) 고점 이후 낮아지는 흐름이며, 10년 중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왔음. 이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 폭이 컸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사고(사망 14명) 등으로 타 산업 사고사망자가 늘어난 결과이기도 함.

- '26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54‰(퍼밀리아드)로 전산업 평균(0.17‰)의 약 3.1배 수준임. 여전히 광업, 어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지만, 전년 동기(0.82‰) 대비 0.28‰p 하락하였으며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산업별로는 광업이 2.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업(1.62‰), 건설업(0.54‰), 운수·창고·통신업(0.47‰) 순임.

〈그림 2〉 '26년 상반기 산업별 사고사망자 수



〈그림 3〉 '26년 상반기 산업별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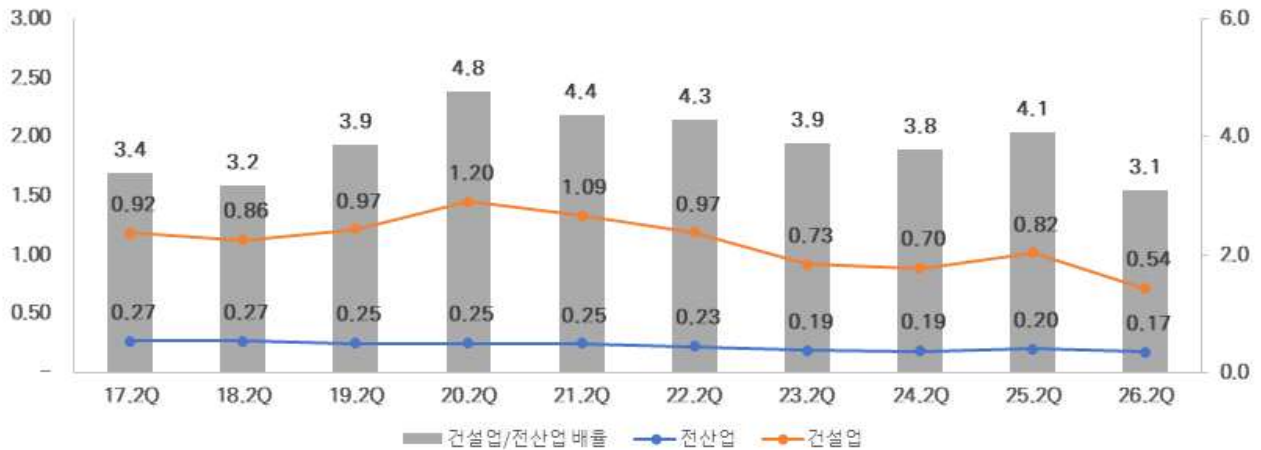
자료 : 2026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 상반기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20년 1.20‰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2년 0.97‰, '24년 0.70‰, '26년 0.54‰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 전산업 만인율도 0.25‰ → 0.17‰로 완만히 개선되었음.
- 건설업과 전산업 간 격차도 '20년 상반기 0.95‰p에서 '26년 0.37‰p로 줄었고, 배율 기준¹³⁾으로 봐도 동기간 4.8배 → 3.1배로 낮아졌음. 물론 건설업이 산업평균보다 3배 이상 웃도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격차가 좁혀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12) 주요 산업별로는 동기간 제조업 1명 감소(104명 → 103명), 건설업 127명 감소(265명 → 138명), 운수창고통신업 45명(38명 → 83명) 증가함.

13)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

〈그림 4〉 최근 10년 전체 및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변화



자료 : 연도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경기 위축과 정부·업계 노력이 함께 만든 감소, 개선 흐름의 정착이 과제

- 최근 건설업 사고사망 관련 지표 개선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와 정부·업계의 안전 관리 강화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두 요인의 기여도를 가려내기 어렵으나, 사고 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 등 유의미한 지표들이 모두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함.
 - (건설경기) 건설투자가 '25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착공 부진이 이어져 현장 작업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움. 다만 산재보험 기준 건설업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량 감소만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를 설명하기는 부족함.
 - (정부·업계 노력) 재해조사 대상 통계¹⁴⁾에서도 '26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명(23.9%)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이 54명에서 31명으로 42.6% 줄어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즉, 정부의 건설업 중대재해에 대한 일관적인 메시지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업계의 안전투자 및 현장관리 강화가 실제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최근의 건설업 안전 개선 흐름은 건설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이어져야 할 성과이며, 현재의 안전 관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중소 규모 현장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과제임.
 - 건설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 공사 물량이 늘어나면 신규·미숙련 인력의 유입이 함께 늘어 재해 발생 압력이 커질 수 있음. 물량이 줄어든 시기에 확인된 개선이 인력이 유입되는 회복기에도 이어지는지가 향후 건설안전 정책과 현장관리의 실질적 시험대가 될 것임.
 - 그리고 대형 건설현장에서 확인된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취약한 중소규모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4) 고용노동부가 '26.7.15.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보상통계와 집계 기준이 다름.